



長錦商船株式會社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<http://www.sinokor.co.kr> TEL:(02)6496-7756 / FAX:(02)319-0551

수 신 : 화주 제위
발 신 : 장금상선 주식회사
제 목 :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(WHARFAGE) 적용 안내의 건

1.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,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표제의 건과 관련, 해양수산부 고시 (제2013-273호.'13.12.27) 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☐ 대상항구 : 울산항 수출/수입 화물
- ☐ 시행일자 : 2014년 1월1일 국내 입출항 모선부터
- ☐ 적용항목 : 외국수출화물 부두사용료(WHARFAGE)
- ☐ 적용요율 : ₩810/20', ₩1,620/40'

3. 감사합니다.